

# 대구지방법원

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10440 부동산강제경매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3. 26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손종욱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2.07.11. 압류		배당요구종기	2025. 1. 20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박상혁	0-1006 호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4.01.30		
우성민	전유부 분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	260,000,000		2021.02.10.	2021.02.10.	
<p>&lt;비고&gt; 우성민: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.03.03.임.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순위 5번 임차권등기(2023.03.03. 등기) 있음(임대차보증금 260,000,000원, 전입일 2021.02.10., 확정일자 2021.02.10.)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
비고란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10440

### [물건 1]

#### 1. 1동의 건물의 표시

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-1

브라운스톤범어

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

####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0층오-1006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54.0587m<sup>2</sup>

####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-1

대 4991m<sup>2</sup>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4,991분의 8.7417

감정평가액

208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	2025.12.30	49,941,000	4,994,100
2회	2026.01.20	34,959,000	3,495,900
3회	2026.03.25	24,471,000	2,447,100
4회	2026.04.22	17,130,000	1,713,000